

문서번호	감사실-567
보존기간	준영구
결재일자	2016.01.29.
공개여부	공개

★과장	팀장	감사실장	감사직무대행	
협 조				

**2015년 11~12월분 법인카드 및 2015년 업무추진비 공개관련
모니터링 점검결과 보고**

2016.

2015년 11~12월분 법인카드 및 2015년 업무추진비 공개관련 모니터링 점검결과 보고

공단 법인카드의 위법·부당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사용내역 모니터링을 통하여 업무추진비성 경비 집행 등 투명성 확보

I 점검개요

□ 점검대상

- 2015. 11. 1 ~ 12. 31까지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 우리은행 WIN CMS 이용 data 점검실시
- 2015년 부서별 업무추진비등 홈페이지 공개내역

□ 점검현황

○ 점검대상 및 건수(총건)

(단위 : 건)

구분	계	감사실	기획조정실	홍보마케팅	인사처	총무처	안전관리처	인재개발원	월드컵경기장	대공원	청계천	도림경기장	상가운영처	추모시설처	장애인복지센터	도로시설처	도로관리처	공영차거노단	도로환경처	교통정보처	교통시설	공사감독	공동구
합계	1,986	40	63	21	51	210	26	37	92	104	108	100	164	141	108	93	100	15	126	33	193	122	60
11월	829	21	25	10	14	81	12	15	48	33	57	34	52	72	36	48	32	10	58	15	86	43	27
12월	1,157	19	38	11	37	129	14	22	44	71	51	45	112	69	72	45	68	5	68	18	107	79	33

□ 주요 점검사항

- 공휴일 및 휴무일 사용 여부
- 관할구역을 현저하게 벗어난 원거리 지역사용 실태
- 비정상시간대(심야시간대 등)사용 여부 - 23시 이후
- 사적(私的) 용도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내역
- 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골프장, 노래방, 유흥주점, 맥주홀 등) 이용 여부
- 동일일자 동일거래처 반복 사용(분할 결제등), 특근식대 집행내역
- 예산운용계획 및 업무추진비성 경비 집행 기준 준수여부
- 2015년 업무추진비 홈페이지 공개내역 준수여부 등

II

점검결과

총 평

- 2015년 11~12월 법인카드 집행관련 부서별 소명요구(18건) 내용 및 법인카드 사용 집행기준(처리기한,예산과목 등) 모니터링 결과,
 - 공휴일 사용 8건, 사용시간대 3건, 반복사용(최소포함) 2건, 기맹업종관련 5건으로서, 사용제한 업종, 사적용도 등 부적정 사용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일부 부서의 경우 법인카드 착오사용으로 취소 또는 변제 사례가 있었으며,
 - 카드사용 후 7일 이내에 지급결의서 미작성 사례가 3건 이 적출되었음

※ 2015년 모니터링 현황

구분	대상건수	모니터링결과 (지적건수)	재정상 조치 (금액/천원)
2015	10,356	27	-
2014	9,303	36	1 (95)
2013	7,458	34	1 (113)

- 2015년 부서별 법인카드 모니터링 결과 (붙임1)

- ☞ 부서 전반적으로 법인카드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및 사용직원들의 꾸준한 인식 개선으로 전년대비 양호한 편이나,
- ☞ 일부부서의 집행기준 미준수 및 개인카드 착오 사용사례 등은 매 점검시 지적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강화 필요

- 2015년 업무추진비등 집행내역 홈페이지 공개기준 모니터링 결과,
 - 업무추진비 등 공개 기한 관련, 최소1일~최대59일 지연 처리(16건/12개부서) 및 사용내역 공개건 누락(1건/1개부서)
 - 업무추진비 공개 기준(항목) 준수관련, 대다수 부서에서 사용시간,사용장소(주소),대상인원 등 공개사항 누락 또는 미흡 게시 (붙임 2)
- ☞ 자체 부서원 대상 『업무추진비 공개기준』에 대한 재교육 철저

□ 세부 집행기준 위반 사례

○ 법인카드 집행절차등 위반 (3건)

- 회계규정 시행내규 49조 6항에 의거,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첨부, 카드사용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결의서 작성하여야 하나,

▶ 기획조정실등 2개 부서에서는 법인카드 집행하면서 지급결의를 최소 2일에서 최장 14일 지연 처리

부서명	지적사항(지급결의 지연)		비고
	건수	내용	
계	3		
기획조정실	1	'15.11.25/ 30,000원(업무추진비)	
도로관리처	1	'15.12.21/ 122,800원(부서운영업무비)	
장애인콜택시운영처	1	'15.12.8/ 70,000원(부서운영업무비)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기준(항목) 미준수

-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및 업무추진비 공개내용 항목추가 확대시행(감사실-4230)에 의거,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월10일 이내 게시하고 공개항목을 명확히 하여야 하나,

▶ 12개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등 사용내역(미사용내역 포함) 공개기일 미준수

▶ 8개 부서에서 업무추진비 공개기준 항목중 시간, 사용장소(상호,주소), 대상 인원(대표사용자 직위 또는 실명포함) 누락 또는 미흡 공개 및 1개부서에서 업무추진비 공개건 누락 (1건)

※ 업무추진비 공개내역 확대(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15.5.14)와 관련하여 업무추진비외 부서운영업무비 및 정원기산업무비도 함께 공개대상이나, 부서 전반적으로 공개항목(기준) 누락 또는 미준수 다수 적출

Ⅲ

조치계획 및 행정사항

- 금번 법인카드 집행기일 초과(3건) 지적부서 포함 2015년 총 지적 건수 3건이상인 부서(4개부서)는 자체 재발방지대책 수립하여 교육 결과와 함께 제출 (해당부서-붙임1 참조)
- 법인카드 사용 집행기준 및 업무추진비 공개기준관련 부서장주관 교육 실시후 교육결과 제출 (전 부서-붙임2 참조)
 - ☞ 특히, 업무추진비 공개기준(10일이내, 미집행내역도 없음으로 공개) 준수 및 부서운영업무비(정원가산업무비 포함)도 업무추진비 공개 기준에 준하여 공개 철저
 - ☞ 향후 업무추진비 공개 누락건에 대하여는 경위서 제출

별도붙임 : 1. 법인카드 사용 소명내용('15.11~12월분) 1부.

2. 업무추진비 공개항목 작성 기준(서울시지침) 1부. 끝.

【붙임1】

2015년 법인카드 모니터링 결과 (부서별)

연번	부서명	지적건수 (총계)	지적사항		
			예산과목 부적정	지급결의 지연	결재(본부장) 누락
1	기획조정실	2		1	1
2	인 사 처	1		1	
3	총 무 처	-			
4	인재개발원	2		2	
5	안전관리처	-			
6	서울월드컵경기장	1		1	
7	돔경기장운영처	-			
8	서울어린이대공원	3		3	
9	청계천관리처	-			
10	공공자전거인수단	-			
11	상가운영처	-			
12	추모시설운영처	5	1	4	
13	장애인콜택시운영처	3		3	
14	도로관리처	1		1	
15	도로시설처	-			
16	도로환경처	-			
17	교통정보처	-			
18	교통시설운영처	1		1	
19	공사감독1처	-			
20	공사감독2처	-			
21	공사감독3처	-			
22	공동구관리처	-			
23	홍보마케팅실	8		8	

【붙임2】

업무추진비 공개기준 모니터링 결과(부서별)

	부서명	공개기일 초과(건수)	공개항목 준수관련 미흡사례	비 고
1	기획조정실	-	-	※부서공통사항: 부서운영업무비 및 정원가산활동비 공개기준미흡
2	인 사 처	1	집행일시(시간) 대상인원(대표사용자 직위등)	
3	총 무 처	-	-	
4	인재개발원	3	집행장소(주소)	
5	안전관리처	-	-	
6	서울월드컵경기장	1	-	
7	돔경기장운영처	1	-	
8	서울어린이대공원	-	-	
9	청계천관리처	-	-	
10	공공자전거인수단	1	집행일시(시간), 장소(주소), 대상인원(대표사용자 직위등)	
11	상가운영처	1	-	
12	추모시설운영처	2	집행일시(시간), 장소(주소), 대상인원(대표사용자 직위등)	
13	장애인콜택시운영처	-	집행일시(시간), 대상인원(대표사용자 직위등)	
14	도로관리처	2	집행일시(시간), 대상인원(대표사용자 직위등)	
15	도로시설처	1	-	
16	도로환경처	1	-	
17	교통정보처	-	-	
18	교통시설운영처	1	-	
19	공사감독1처	-	-	
20	공사감독2처	1	-	
21	공사감독3처	-	-	
22	공동구관리처	-	집행일시(시간), 장소(주소), 대상인원(대표사용자 직위등)	
23	홍보마케팅실	-	업무추진비 공개건 누락, 집행장소(주소), 대상인원(대표사용자 직위등)	